



유럽산 원종오리 수입 정상화

농림축산식품부 유럽연합(EU) 산(産) 동물·축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1.~8.21.) 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이 확정될 경우 가금 및 가금제품은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리투아니아 등 11개국에서 수입이 가능해 진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히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동·축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면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USSIA



개정하는 수입위생조건(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으로부터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입 중단

02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수출국이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할 경우 수출국 내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은 수출 가능

03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

04

수출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 중단